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문 화 예 술 과

(재)구미문화재단 출연안

구 미 시

(재)구미문화재단 출연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구미시 문화예술사업 진흥과 시민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한 구미문화재단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지원 필요

나. 2027 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구미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기 관 명 : (재)구미문화재단

2) 소 재 지 : 구미시 송정대로 120

3) 조직/구성 : 4팀 26명(현원 : 4팀 25명)

4) 출연금액 : 5,200백만원

5) 근 거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주요 사업

1) 창작기반 활성화 사업

○ 지역예술인 실태조사 및 창작활동·역량강화 지원

○ 예술인 창작공간 운영 및 육성 지원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활동가 역량강화

○ 청년 문화예술 향유 지원 및 관객 개발

2)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 시민문화활동 지원 및 생활권 문화 활성화

○ 지역 기반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 참여 확대

○ 산업단지 및 유휴공간 문화예술 활성화

○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3) 문화예술공간 운영

○ 시민 주도 생활문화 활동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미생활문화센터 운영

○ 미디어 교육 및 창작활동을 위한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운영

○ 전시와 배움을 연계해 일상 속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각산살롱 운영

○ 지역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기회 제공을 위한 야외무대 대관·운영

다. 출연의 필요성

1) 구미시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성 강화와 창의적인 문화정책 및 문화예술 사업 발굴·육성을 위해 설립한 구미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 지원

2) 구미시 문화예술 경쟁력 제고와 자생력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재원 지원 필요

3) 구미라면축제의 문화관광축제 도약과 재단 역할 확대에 대응하여, 조직 운영 안정성 확보 및 축제 전담기능 강화를 위한 재원 지원 필요

관 계 법 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미시(이하 “시”라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재)구미문화재단 출연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시의 문화예술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구미문화재단의 전문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구미문화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분하고 전액 시비로 산정하였음

○ 2028년 이후 비용은 2027년 소요액을 기준으로 매년 약 3% 증액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7)	2차년도 (2028)	3차년도 (2029)	4차년도 (2030)	5차년도 (2031)	합계
세출	5,200	5,356	5,516	5,682	5,852	27,606

4.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7)	2차년도 (2028)	3차년도 (2029)	4차년도 (2030)	5차년도 (2031)	합계
시 비	5,200	5,356	5,516	5,682	5,852	27,606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문화예술과 김명동(☎480-660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7년)

(단위: 백만원)

구 분	소요비용	산출기초
합 계	5,200	
인 건 비	1,542	· 보수(대표이사) - 81,478,000원 × 1년(1명) = 81,478,000원 · 보수(직원) - 840,456,000원 × 1년(24명) = 840,456,000원 · 보수(기간제) - 100,872,000원 × 1년(4명) = 100,872,000원 · 제수당(대표이사 및 직원) - 268,344,000원 × 1년(25명) = 268,344,000원 · 제수당(기간제) - 18,637,000원 × 1년(4명) = 18,637,000원 · 퇴직급여 충당금 - 115,300,000원 × 1년(29명) = 115,300,000원 · 평가급 - 117,401,000원 × 1회 = 117,401,000원
운 영 비	680	· 관리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소모품비, 임차료 등) - 679,764,000원 × 1식 = 679,764,000원
예 비 비	405	· 봉급예비비(사무국장, 팀장2, 직원2) - 352,748,000원 × 1식 = 352,748,000원 · 일반예비비 - 52,000,000원 × 1회 = 52,000,000원
사 업 비	2,573	· 전문예술인 활동 지원 : 226,150,000원 · 청년 예술인 육성 지원 <STAGE:G> : 65,600,000원 · 문화예술교육 지원 : 120,860,000원 ·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역량강화 사업 : 31,500,000원 · 구미청년상상마루 운영 : 204,260,000원 ·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 98,688,000원 · 구미 문화예술 실태조사 : 59,000,000원

구 분	소요비용	산출기초	
		· 2030 구미여성문화클럽	: 30,000,000원
		· 거리문화 활성화 사업	: 120,000,000원
		· 시민문화활동지원사업	: 200,000,000원
		· 문화가 있는 마을 사업	: 94,000,000원
		· 산업단지 문화예술 지원사업	: 175,000,000원
		· 문화향유기반 조성사업	: 74,000,000원
		· 구미시민합창페스티벌	: 60,000,000원
		· 구미 아틀리에: 시민의 방	: 80,000,000원
		· 구미생활문화센터 운영	: 292,230,000원
		·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운영	: 395,534,000원
		· 금리단길 각산살롱 운영	: 111,323,000원
		· 구미시 야외무대 공연 운영	: 7,250,000원
		· 인동생활문화센터 운영	: 127,605,000원

소 관 부 서		문화예술과
입 안 자	과 장	김 종 미
	팀 장	정 봉 석
	담 당 자	김 명 동 (480-6602)